

편집 및 심사에 관한 규정

1. 『禪文化研究』는 연 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 예정일은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2. 논문의 범위는 불교학 및 그와 관련된 학술연구논문으로 한다.
3. 본 연구원 개최의 월례발표회·학술회의·학술상 발표 논문과 투고 논문 수록을 원칙으로 한다.(이미 다른 논문집이나 단행본에 게재된 논문은 제외한다.)
4.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발표 논문과 투고 논문에 대한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친다. 편집위원회는 원장이 위촉한 불교학 관련 전공자 5인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불교학 관련 분야에서 대내외적 지명도가 높고 학술적 성과가 우수한 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논문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각 논문에 대하여 관련 전공 학자 중 연구업적과 학술활동이 탁월한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그 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사’·‘게재 불가’ 등의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 3)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하여 인용도 검사지(표절 방지 검색 엔진 활용)를 활용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관리하고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5) 논문의 투고 및 심사 관리는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6. 편집위원장의 논문 게재 결정은 논문심사 판정 점수에 의하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른다.
 - 1) 원칙적으로 심사 결과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 그 논문의 게재를 결정한다.
 - 2)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수정 권고 사항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권고 사항이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그 논문의 게재를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 3) 심사 결과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그 논문의 게재 불가 사유를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은 게재의 불가함을 최종 확정한다.
 - (1) 심사평에 대한 검토 결과, 학술지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접수를 집계 외의 결과로 반려 조치할 수 있다.
 - (2) 기타 논문인용도검사지와 저작권양도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초록 및 투고논문의 분량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논문의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 4)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그 논문의 재심 사유를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1)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기(해당 발행기간)에 원칙적으로 탈락된 것으로

보고, 차기(다음 발행기간)에 다시 투고해야 한다.

(2) 재심 요청은 투고자의 재심 청구에 의거하여 당기(해당 발행 기간)에 진행되며, ‘가(통과)’와 ‘부(반려)’로 판정된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편집위원장이 이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5) 심사 결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 소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인 심사위원의 총점을 평균점으로 환산한 결과에 따라 90점 이상이면 ‘게재 가’, 85점 이상 90점 미만이면 ‘수정 후 게재’, 80점 이상 85점 미만이면 ‘수정 후 재심사’, 80점 미만이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다.

게재 순위는 심사 점수 순서에 의하며 판정 결과에 따른 관리는 위의 1), 2), 3), 4)항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이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7. 논문이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다른 논문집이나 단행본 등에 공표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라야 한다.
- 2) 문제나 방법, 결과 면에서 새로운 주장을 담고 있어야 한다.
- 3) 적절한 근거와 정합적 추론에 의거하여 문제에 대한 논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 4) 학술논문으로서의 체제를 온전히 갖추어야 한다.
- 5) 『禪文化研究』 논문투고 원칙 및 요령의 체제를 따라야 하며, 체제에 어긋날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 6) 연구비를 지원 받아 작성한 원고는 이를 논문에서 밝혀야 한다.
- 7) 기존의 발표한 원고를 수정·심화 보완한 경우에는 반드시 논문 서두의 하단이나 해당 장(절)이 시작하는 면 아래에 이를 밝혀야 한다.

8. 심사기준 및 평가항목, 점수, 판정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평가

항목	배점	평가	평가 근거	비고
주제의식의 선명성과 논문구성의 명료성	15			
연구의 독창성과 선행연구의 이해	15			
논거의 타당성과 인용, 각주, 참고문헌의 정확성	15			
문헌해석[자료분석]의 정확성 및 기술의 논리성	15			
불교연구의 유용성 및 기여도	15			
선문화연구 원고작성 요령기준의 준수 및 용어[문장]사용의 정확성 (오탈자 포함)	15			
국문, 영문초록의 분량과 내용의 정확성	10			
총 점	() 점			
종합 소견				

2) 판 정

* 위의 평가에서 산정한 총점에 따라 판정 등급을 표시함

등 급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총 점	90점 이상	89-85점	84-80점	80점 미만
판 정				

<심사판정표>

심사결과			심사점수	심사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AAA(12)	게재가 (11~12점)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AAB(11)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AAC(10)	수정후 게재 (9~10점)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ABB(10)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ABC(9)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BBB(9)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AAD(9)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ABD(8)	수정후 재심사 (7~8점)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ACC(8)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BBC(8)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ACD(7)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BBD(7)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BCC(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ADD(6)	게재불가 (3~6점)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CCC(6)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BCD(6)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CCD(5)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DDB(5)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DDC(4)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DDD(3)	

* A = 4, B = 3, C = 2, D =1.

9.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 양식별첨, 2023년 2월 5일부터 시행)